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안
과
대
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학부모용

I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4
		02 학교폭력 예방 및 징후	8

II	학교폭력 대처하기	01 학교폭력 신고	14
		02 관계회복	14
		03 학교폭력 전담기구	16
		04 학교폭력 사안조사	16
		05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17
		06 학교장 자체해결제	18
		0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19
		08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20
		09 분쟁조정	24
		10 조치에 대한 불복	25

III	학교폭력 관련 지원 안내	01 학교폭력 통합지원	28
		02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 내용	30

참고	0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34
	02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35
	0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36
	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37



I



학교폭력의 이해

-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 02 학교폭력 예방 및 징후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용어 정의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에서도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교육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

다음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주요 예시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이 외에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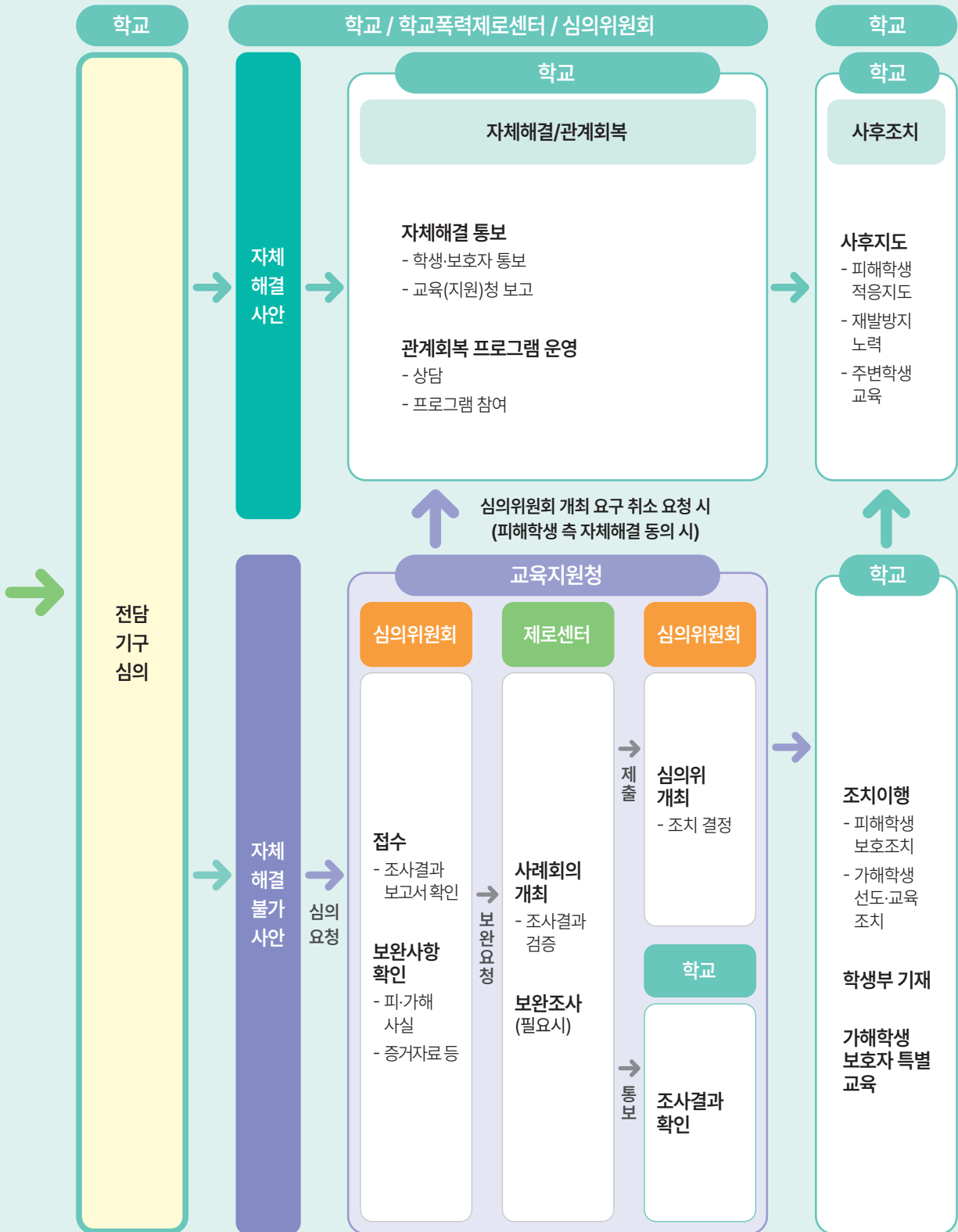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유형	예시상황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은 사안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학교폭력 예방 및 징후

학생과 보호자는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과 대처 방안 등을 이해하여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은 예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아이들이 보내는 SOS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가정에서

1.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2.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3.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4.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5.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6.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1.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2.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3.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4.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5.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1.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2.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3.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4.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5.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6.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7.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8.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9.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10.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예시)

학생

-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 스스로가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겠습니다.
- ✓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 ✓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 ✓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 교내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에게 알리겠습니다.

보호자 / 학부모

- ✓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 ✓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 ✓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사

-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 ✓ 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5. 00. 00. 000 학교장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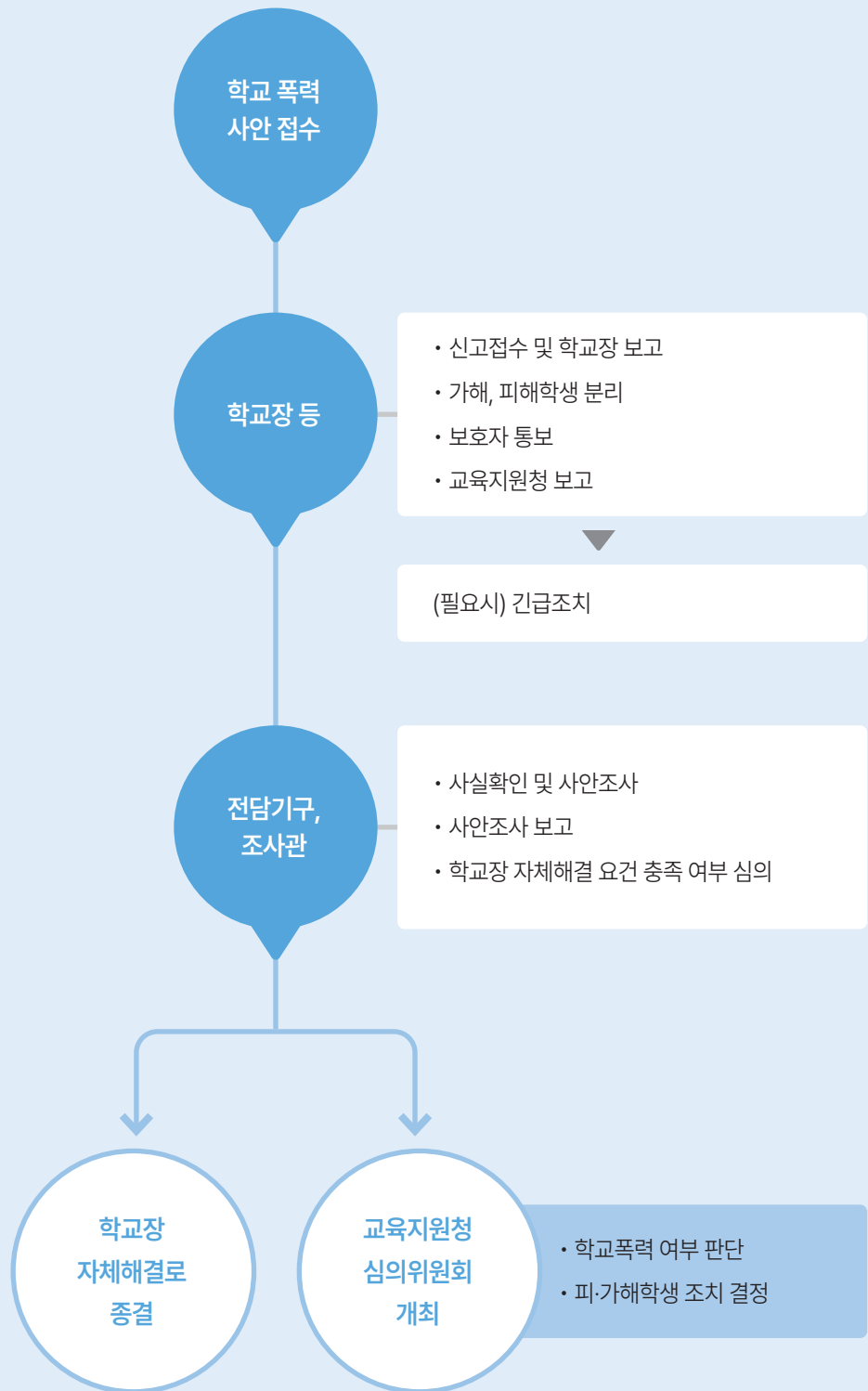


학교폭력 대처하기

- 01 학교폭력 신고
- 02 관계회복
- 03 학교폭력 전담기구
- 04 학교폭력 사안조사
- 05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06 학교장 자체해결제
- 0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 08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09 분쟁조정
- 10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안 처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 후, 가해학생을 최대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분리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제2호(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조치를 합니다.
- 필요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까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최초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호자 면담, 목격학생 면담 등을 실시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사안조사를 마치면,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합니다.
 - ☞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양측의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육장은 조치를 최종 결정하여 피·가해학생과 학교에 통보합니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 피·가해학생은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 *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01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교사나 책임교사 등에게 말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내 신고방법(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SNS, 홈페이지 등)과 교외 신고방법(112 전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효과적 소통을 위한 대화법

자녀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들으면 보호자는 누구라도 당황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자녀이기에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준비되면 알려줄래?”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충분히 듣고 힘듦에 공감한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용기 내어 표현한 피해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쉽지 않았을 텐데 믿고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처를 위로하고 존중한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동안 네가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네.”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아지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같이 생각해 보자.”

<2024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관계회복



관계회복이란?

관계회복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서로 일상 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계회복의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합니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일상회복을 조력합니다.

●●● 관계회복 진행 주요 내용

- 학교장은 법률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함

●●● 학교폭력 관계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협조 요청

• 관계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자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던 학생들의 용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소통을 시도한 피해학생과 자신의 잘못을 용기내어 피해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마음먹은 가해학생의 태도에 진심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관계회복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생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 가해측을 만나 소통하는데 불안, 우울, 공포 등 심리적 어려움은 없는지 탐색해주세요.
- 가해측과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지 충분히 탐색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학생의 경우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측에게 사과를 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주세요.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서로 간 오해 및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관계가 편안해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처리를 같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심의합니다.

- * 전담기구란,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입니다.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거나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관계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신고·접수가 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피해 및 가해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
-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참고

보호자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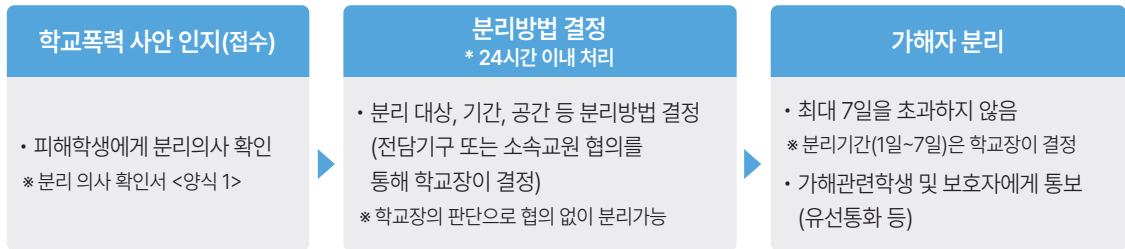
-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주세요.
- 상대측 학생을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또는 재발 시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분리절차



분리 예외 사유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학생이 소속한 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및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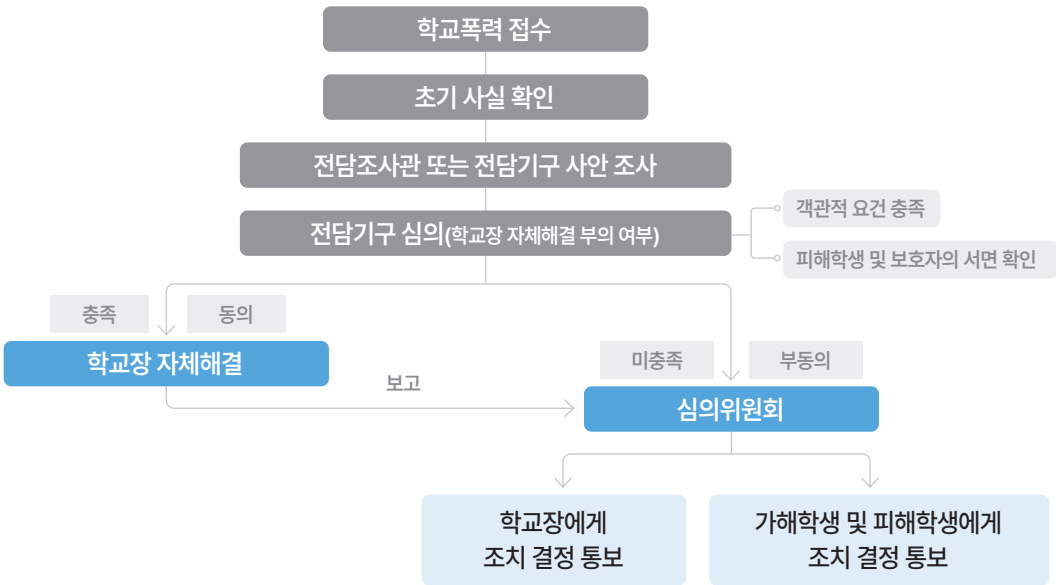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우선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회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객관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양식 2,3> 참조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가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서로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심의방식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이주배경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양식4> 참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러 개)의 조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일시보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입니다.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출석일수 산입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합니다.

이주배경·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이주배경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주배경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또는 여러 개)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전학, 자퇴 등)은 제한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와는 달리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9호 퇴학처분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 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가해학생이 제2호부터 제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합니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 내용은 유지됩니다.

기재내용 삭제 -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제1호·제2호·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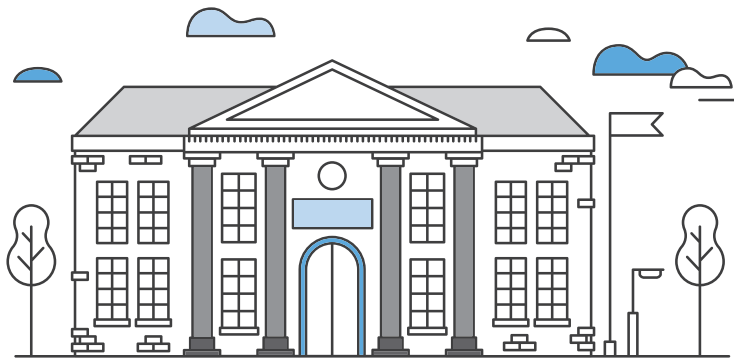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제4호·제5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제8호

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합니다.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 분쟁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피해, 금전적 손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학생 측 책임의 이행을 돕고 추가적인 피·가해를 방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소송 등 사법 단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양측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교육 3주체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대상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가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 측)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I



학교폭력 관련 지원 안내

- 01 학교폭력 통합지원
- 02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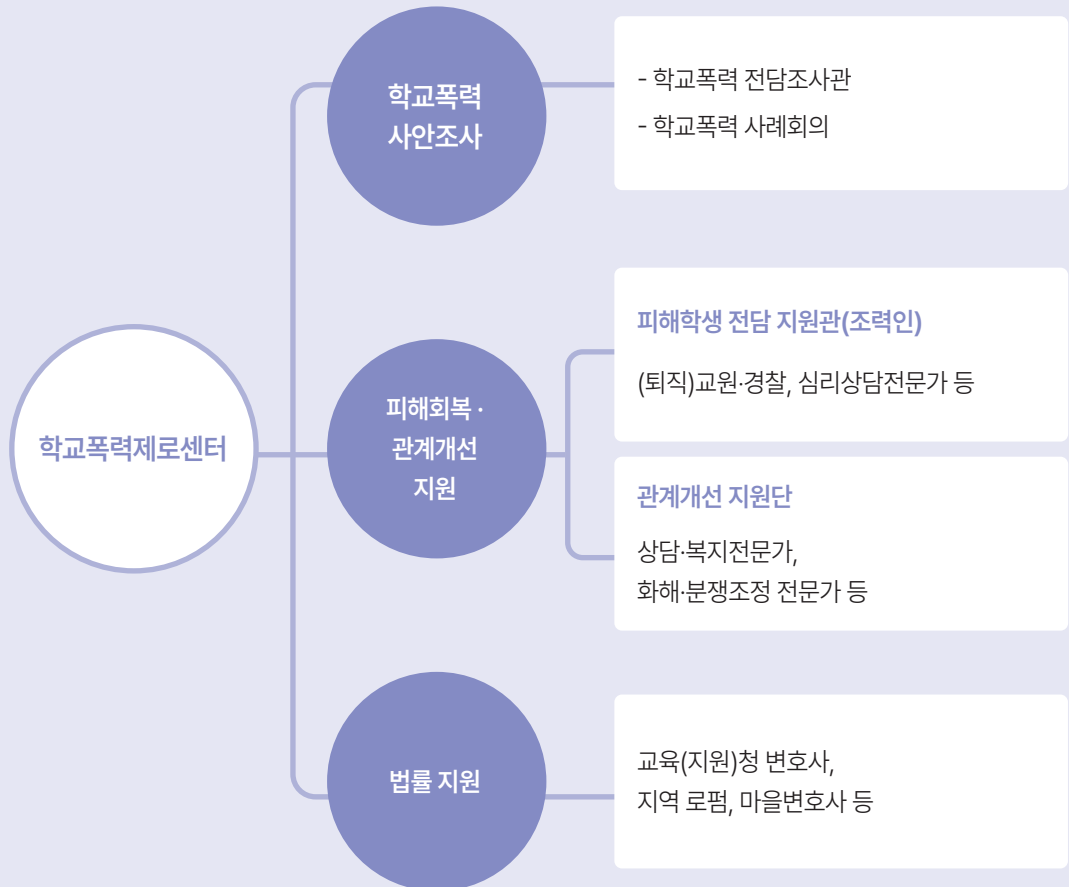


학교폭력 통합지원

🔍 학교폭력 제로센터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전담부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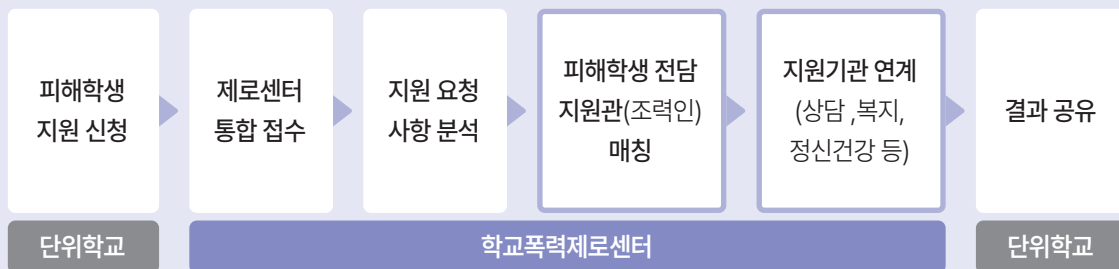
○ 학교폭력제로센터 구성(예시)



* 학교폭력 통합지원 관련한 세부 구성 및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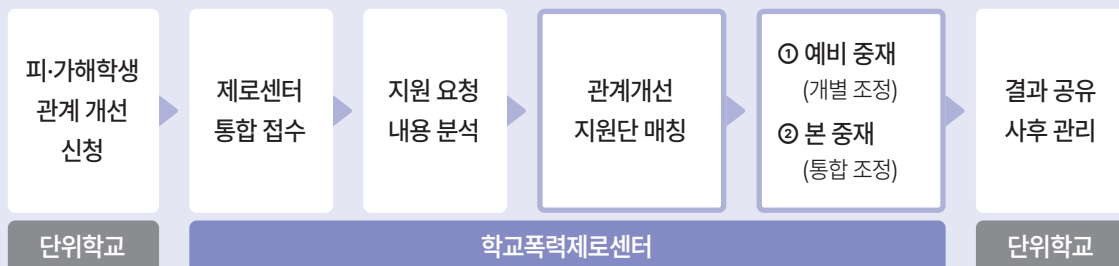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어려움 공감(경청)하고,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의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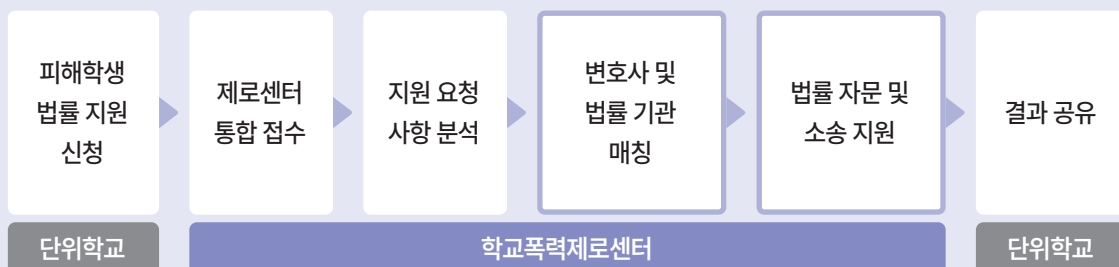
● 관계회복 지원단

교육전문가,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으로 관계회복 지원단이 구성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관련 학생 학교생활 정상화·적응 지원을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 피해학생 법률지원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소송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 내용

○ 교육기관(학교 및 교육청)

기관	역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지원 		
	<table border="1"> <tr> <td>위(Wee)클래스</td> <td>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적 관련 지원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 심리평가, 상담, 치유를 위한 서비스 - 위(Wee) Project를 활용한 상담 및 치료 지원 		
	<table border="1"> <tr> <td>위(Wee)센터</td> <td>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td> </tr> </table>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table border="1"> <tr> <td>가정형 위(Wee)센터</td> <td>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td> </tr> </table>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table border="1"> <tr> <td>병원형 위(Wee)센터</td> <td>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td> </tr> </table>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table border="1"> <tr> <td>위(Wee)닥터</td> <td>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td> </tr> </table>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및 피해학생의 수요와 필요에 따른 상담 및 치료, 보호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단기, 중기, 장기 지원 등) 		
	<table border="1"> <tr> <td>보호형 (통학형)</td> <td>가정·학교 일과시간에 통학을 하며 상담·일시보호·교육·회복·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td> </tr> </table>	보호형 (통학형)	가정·학교 일과시간에 통학을 하며 상담·일시보호·교육·회복·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보호형 (통학형)	가정·학교 일과시간에 통학을 하며 상담·일시보호·교육·회복·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table border="1"> <tr> <td>기숙형</td> <td>가정·학교 일과시간에 기숙생활을 통해 상담·교육·회복·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td> </tr> </table>	기숙형	가정·학교 일과시간에 기숙생활을 통해 상담·교육·회복·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기숙형	가정·학교 일과시간에 기숙생활을 통해 상담·교육·회복·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학교안전 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상환 청구 		

○ 부처 및 기관

기관	역할
지자체	- 긴급생계 및 긴급치료비 지원 (지자체별 지원 상이)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을 통한 지역별 지원방안 수립 등
경찰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국번 없이 117, 24시간 운영 - 법률정보 및 상담,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 구조 실시 - SPO(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지원 등

○ 상담 및 치료 전문기관

기관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전화(1388)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여성긴급 전화(1366)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대상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화상담 지원 등

○ 피해 지원 전문기관

기관	역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진료, 정신과 진료, 기타 외상치료), 수사지원(피해자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법률지원(법적 절차지원, 피해조사지원), 상담지원(사례접수, 면담조사, 연계지원서비스, 가족상담)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스마일센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지원, 피해 자료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연계, 의료 및 심리치유,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 및 보호자 관련 문제나 어려움에 대하여 예방과 해결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민간단체

기관	역할
푸른나무재단	- 학교폭력 관련 전화상담(1588-9128) 및 사이버 상담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지원, 장학 지원, 화해·분쟁조정 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지원 (위로상담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전담지원기관 '해맑음센터' 운영 (대전)
열린의사회	- SNS를 통한 상담지원(Daum에서 "학교폭력" 혹은 "상다미쌈" 검색 후 신청) - 학교폭력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

○ 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기관

기관	역할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

○ 법률관련기관

기관	역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상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및 소송대리 관련 지원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이해 및 대화하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놓이기도 합니다.

- 마음속 화와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답답해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 가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어요.
- 가해학생들이 무섭고 폭력이 반복될까 불안해요.
-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요.
-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요.
- 저의 사안으로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자녀와 대화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힘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요.
-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요.
- 제가 당한 피해가 외부에 소문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아직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다려 주세요.

<2024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해 및 대화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여러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 피해 학생 및 가해 행동을 목격한 학생이 신고하여 처벌받을까 몰라서 불안해요.
- 피해 학생이 예상과 다르게 큰 신체적 피해를 입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까 두렵기도 해요.
- 학교 및 친구들에게 문제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아요.
- 가해 행동을 인지한 부모 및 교사가 자신에게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되요.
-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고, 자신의 행동이 후회돼요.
- 일단 발생한 일이니 앞으로 될 대로 되라라고 회피하고 싶어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가해를 한 자녀와 대화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자녀의 문제로 인해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들이 이 문제를 객관적 판단(합리화, 축소 등)을 방해하나요?
- 자녀의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미래의 자녀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미래의 자녀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2023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사안 번호: (학교에서 작성,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의 사안 번호)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희망합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1일~7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종료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초일 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학교 2025-()호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 시 추후 위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학생: (인)

피해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사안번호: ()학교 2025-()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청사유	요건			해당 여부 (○, ×)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00.0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공문에 첨부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 ()학교 2025-()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p>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5.00.00.</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p>			

[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취소 요청 공문에 첨부함

PM2025-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 학부모용

다국어 번역·디자인 작업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협력 교육부(이주배경학생지원팀)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전화 02-3780-9943
팩스 02-3780-9959
홈페이지 www.edu4mc.or.kr(중앙다문화교육센터)
디자인·번역 (주)비존

* 본 자료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개발·요약한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번역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학부모용